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산안전 관리 강화〉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0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추가	2
2. 광산안전관의 정기적 파견 의무화 등	7
3.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 ...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1.
3. 회부연월일 : 2025. 5.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낙반·붕괴의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79건으로, 사망자 59명을 포함하여 3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광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26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추가

개정안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사항에 ① 집적장의 설치 및 유지 관리, ② 정보통신망·대피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4. (생략) 5. <u>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u> 6. 7. (생략) ② (생략) 제9조의2(집적장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집적장(集積場)의 설치 및 유지 관리</u> 3. 4. (현행과 같음) 5. <u>구호조직·정보통신망·대피시설</u> ----- ----- ----- 6.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집적장등) ① ----- -----

현행	개정안
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u>집적장(集積場)</u>, 갱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u>집적장</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조¹⁾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낙반·붕괴·가스 폭발의 방지, 폐석·광물찌꺼기의 처리에 수반되는 광해의 방지,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 제4조²⁾ 및 시행규칙 제2조³⁾ 등은 광업권자 또는 조

1) 「광산안전법」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2.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내수·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기구·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안전조치) ① 법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암반의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지지대 등의 설치·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추락 방지시설의 설치·유지 등 안전조치

광권자가 해야 할 안전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용수(湧水) 방지를 위한 구갱(舊坑) 등에 대한 안전조치: 굴진(掘進)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유지, 선진천공(先進穿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한다) 및 안전광주[안전광주: 갱내의 주요시설(갱도를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해 채굴하지 않고 남겨두는 광체 기둥을 말한다]의 설치
 3. 화재의 방지조치: 방화설비·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발화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등의 안전보관·저장 및 처리, 불의 사용 제한 등 화재 방지조치
 4. 통기의 유지 및 갱내 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갱내 공기질의 유지·측정, 통기시설의 설치·유지, 갱내 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 발생시설의 사용 제한 등 안전조치
 5.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유지, 비상시 송전 정지, 감전 방지, 접지·과전류로부터의 보호 등 전기설비의 안전조치
 6. 운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운반시설의 안전장치 설치·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에 대한 안전조치
 7. 통행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 유지, 먼지의 날림 방지, 소음·진동 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 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고기압에서의 작업금지 등 안전조치
 8. 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티플러(tippler: 차를 기울여서 짐을 부리는 장치) 및 선광장(選鑛場) 등에서 날리는 먼지의 처리 및 방지, 기관·공기압축기·가스집합용접장치·기중기·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유지
 9. 광해(鑛害)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 가.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반침하의 측정, 갱도와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 및 그 밖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
 - 나. 지반 침하,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집적장(集積場)의 안전한 설치·유지
 - 다.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투기 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등 안전조치
 - 라. 먼지의 날림 또는 소음·진동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 마. 갱수(坑水)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갱수·폐수의 배출 금지와 갱수·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3)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1. 안전등·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2. 온도계·습도계·기압계·풍속계·메탄가스측정기·메탄가스자동경보기·일산화탄소측정기·탄산가스측정기·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후송용차량·산소호흡기·산소구급기·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5. 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6. 교육장비
 7. 갱내통신장비
 8. 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개정안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사항에 ① 폐석 또는 광물 찌꺼기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집적장의 설치 및 유지 관리, ② 정보통신망·대피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광산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광산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유사시 대비 안전 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먼저,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집적장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를 집적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적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광해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광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거리 무선통신장비⁴⁾는 유사 시 지상 상황실과의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에 애로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장거리 광역통신장비 등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필요해 보이고,

대피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도 현재 대피시설 설치규정이 미비하여 대부분의 광산에는 갱도 내 생존박스⁵⁾ 등 긴급대피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유사 시 광산근로자의 안전

4) 장기간 채굴이 가능한 광산근로자 5인 이상인 83개 갱내광산 중 62개 광산(73%)에서 단거리 무선통신장비 사용(‘22년 기준)

5) 갱도에서 화재·매몰·붕괴 등 위험발생 시 광산근로자가 긴급히 대피하여 구조 시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긴급대피시설이며, 장소를 이동해가며 설치 가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집적장의 설치·유지는 현행법 시행령 제4조에서, ② 갱내통신장비 등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는 현행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현행 위임조문이 규정하는 사항의 중요도, 타 조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상위법령 명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광산안전관의 정기적 파견 의무화 등

개정안은 ① 광산안전관의 수는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② 광산안전관을 매월 정기적으로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업무, 광업시설 상황 등에 대한 검사·질문 등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후단 신설>	제20조(광산안전관) ① ----- ----- ----- ----- ----- . 이 경우 광산안전관의 수는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 ----- ----- -----하여야 하고,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현행	개정안
④ (생략)	<u>에는 수시로 검사·질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u> ④ (현행과 같음)

가.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함

현행법 제20조⁶⁾는 광산안전⁷⁾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두도록 하고,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기준으로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총 28명의 광산안전관을 배치하여 관할지역의 광산안전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6) 「광산안전법」

제20조(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7) 「광산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 나. 지하자원의 보호
 - 다. 광업시설의 보전
 - 라. 광해의 방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관 현황]

(2024년 말 기준)

광산안전 사무소	관할지역	광산안전관 수(명)	가행광산수 (개소)	근로자수 (명)	재해자수 (명)
동부	강원 등	9	111	3,131	21(사망 2)
중부	경북, 충북 등	7	81	893	6(사망 1)
남부	전북, 전남, 경남 등	7	43	339	-
서부	충남, 경기, 서울 등	5	37	285	-
합계	전국	28	272	4,648	27(사망 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행법은 광산안전관의 수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은 광산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광산안전관 1인의 감독대상 광산의 범위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광산안전관의 수는 광산의 수 외에도 광산근로자의 수 및 재해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광산안전관 인력 조정은 공무원 인력증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정원 증원) 및 인사혁신처(인력 채용)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광산안전관의 정기적 파견 의무화

현행법 제20조제3항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 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은 광산안전관이 실시하는 광산안전검사의 종류를 정기안전검사, 수시안전검사, 합동안전검사, 실태조사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라 광산안전관은 정기안전검사 및 수시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9).

8) 「광산안전법」

제20조(광산안전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안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9)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5조(안전검사의 종류)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안전검사
2. 수시안전검사
3. 합동안전검사
4. 실태조사

제16조(정기안전검사) ① 제15조제1호의 정기안전검사로 함은 사무소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 개시 5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광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안전검사는 광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검사의 대상 광산 및 검사 횟수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소장은 법·영·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광산안전관리 감독체계와 운영 현황
2. 광산안전관리직원 확보 상태
3. 안전에 관련한 각종 일지와 기록문서의 보존 현황
4. 안전교육 실시 계획, 실적 및 해당 시설 현황
5. 성능검사 및 시설의 관리사항

[최근 3년간 광산안전검사 실시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안전검사	449	485	543
수시안전검사	63	95	123
합동안전검사	44	18	13
실태조사	272	226	239
합계	828	824	91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은 광산안전관을 매월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검사·질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매월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

6. 광산안전장비, 응급구호용품 및 재료의 확보와 관리 현황
7. 구호대조직 및 교육훈련 실시 현황
8. 운반 시설·장비 및 관리 현황
9. 통기계통의 점검 및 시설의 관리 현황
10. 계획적인 굴진 및 채굴 현황
11. 배수 또는 출수방지 시설 및 관리 현황
12. 기계·전기 시설의 관리 현황
13. 광해방지 대책, 조치사항 및 시설관리 현황
14. 재해보고 체계 및 통계 분석 등 관리 현황
15. 안전명령에 대한 이행 현황
16. 갱내 환경개선 대책
17. 화재방지 대책

④ 사무소장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수시안전검사) 제15조제2호의 수시안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 광산안전에 대한 민원, 고발 및 정보 입수 등에 따라 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광산으로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3. 장관의 지시나 안전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조치한 안전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 있으며,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규정(「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광산안전관이 매월 정기적으로 광산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

개정안은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과태료) <신설>	제26조(과태료) ①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삭제>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법 제16조¹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해, 사고, 위험 발생 등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제26조제2항제6호¹¹⁾는 해당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광업권자가 재해나 사고의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구조작업 착수 등 사고 수습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제재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5.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재 수준의 강화를 통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보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광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조항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¹²⁾은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12)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 의 처
02)6788-5464